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17호 2015. 09. 25.(금)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7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8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3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49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2. 주요내용

- 문화활동 지원 사업범위 추가에 대한 신설(조례안 제4조)
-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 예산 근거 규정 신설(조례안 제6조 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출연월일	2015. .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칩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3. 주요내용

- 문화활동 지원 사업범위 추가에 대한 신설(조례안 제4조)
-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 예산 근거 규정 신설(조례안 제6조 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육성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진흥기금”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6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

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제4조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등은”을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채·공채·기타”를 “국채·공채·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위촉한자로”를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 및 감사 2인 위원중”을 “1명 및 감사

2명은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년도”을 “해당연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회현금관리 재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회현금관리의 여러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중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 ----- ----- ----- ----- ----- -----.</p>
<p>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p>	<p>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육성대상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가한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진흥기금</u> ----- ----- ----- ----- -----.</p> <p>② ----- 각 호의 ----- -----.</p>

1. · 2. (생략)

3. 기타 수입금

③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기금 및 보조금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 5. (생략)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신설>

<신설>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금

③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회계연도

제4조(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 5. (현행과 같음)

6. <삭제>

6. -----

7.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 그 밖에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생략)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잉여금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①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익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구청장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구청장의 사업보조비를 받는 경우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현행과 같음)

③ -----
-범위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
은 -----
-----.

④ 제3조에 따라 -----

-----각 호의 -----
-----.

- 1. 국채·공채·그 밖의 ----
- 2. 그 밖의 -----

제6조(사업의 보조) ① -----
-----따라 -----

-----.

② -----

----- 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
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육성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
고,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문화
원장, 기타 지방문화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 1인 및 감사 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
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 및 구청장의 보조
금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육성
위원회(이하 -----
-----.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

③ -----

-----그 밖의 -----
-----사람 중
서 ---위촉한 사람으로-----.

④ -----1명 및 감사 2명
은 위원 중-----.

⑤ -----
-----간사 1명과 서기 1명 -

-----.

제8조(위원회의 기능) -----

-----각 호의 -----.

<p>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 청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 한 기금의 전출을 거부할 수 있 다.</p>	<p>----- ----- ----- --.</p>
<p><u>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u>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16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 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서 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수당 등) ----- ----- -----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 ----- -----.</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7조(시행규칙) -----시 행에 ----- -----.</p>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관 계 법 령

□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하삭제)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 문화대학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강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기준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2. 주요내용

-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조례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출연월일	2015. .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침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서구 문화대학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강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기준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3. 주요내용

-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조례안 제1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아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로,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 중 “대학운영”을 “문화대학 운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학”을 “문화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운영”을 “문화대학 운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내지 9인으로”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생대표”를 “학생대표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임기중이라”를 “임기 중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 중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법인·단체등에게”를 “전문성을 위하여 개인·법인·단체 등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u></p>	<p><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2조(설치) <u>인천광역시서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u>관할아래</u>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u>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u>(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을 둔다.</p>	<p>제2조(설치)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u>관할아래</u> ----- -----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u>-----.</p>
<p>제5조(학장) ① (생 략) ② 학장은 교무를 <u>통할</u>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수강생)을 지도하고 문화대학을 대표한다.</p>	<p>제5조(학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총괄</u>----- ----- -----.</p>
<p>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u>대학운영</u>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u>문화대학 운영</u> ----- ----- ----- ----- -.</p>
<p>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문화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u>다음</u> 사항을 심의한다. 1. <u>대학</u>의 예산안 및 결산안 2. 3. (생 략)</p>	<p>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u>다음</u> <u>각 호</u>의 -----. 1. <u>문화대학</u> ----- 2. 3. (현행과 같음)</p>

<p>4. <u>대학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u></p>	<p>4. <u>문화대학 운영</u> ----- -----</p>
<p>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5내지 9인으로</u>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p>	<p>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u>5명 이상 9명 이하로</u> ----- -----.</p>
<p>② 위원은 다음 <u>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u>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p>
<p>1. (생략) 2. <u>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u></p>	<p>1. (현행과 같음) 2. <u>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u></p>
<p>3. <u>구의원</u></p>	<p>3. <u>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2명</u></p>
<p>4. <u>학생대표</u></p>	<p>4. <u>학생대표 1명</u></p>
<p>5. <u>문화·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자</u></p>	<p>5. ----- -----<u>풍부한 사람</u></p>
<p>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운영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회</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9조(회의)----- ----- -----<u>개 의(開議)</u>----- -----.</p>
<p>제10조(강사임명) ① (생략) 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u>임기중이라도</u>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p>	<p>제10조(강사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임기 중이라도</u> ----- -----.</p>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 문화대학의 교육 과목별 수강료는 70,000원 범위 내로 하며,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생략)
3. 기타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13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범위 -----.

제11조(수강료) -----범위 -----.

제12조(수강료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3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p>제14조(수강료의 징수납입) ① 수 강료는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 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u></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u>지방세법을 준용한 다.</u></p> <p>제15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대 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 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u>개인·법 인·단체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 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u>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 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 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u></p> <p>제14조(수강료의 징수납입) ① -- -----<u>별지 서식 에 따라</u> ----- -----.</p> <p>② ----- -----「<u>지방세법</u>」----- --.</p> <p>제15조(위탁관리) ----- ----- -----<u>전문성을 위하여 개인· 법인·단체 등에게</u> ----- --.</p> <p>제16조(시행규칙) -----<u>시 행에</u> ----- -----.</p>
--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7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1호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정비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1호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학장”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주6시간”을 “주 6시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수료자대우)”를 “(수료자 대우)”로 하고, 제5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로, “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18세이상 구민으로서 인천광역시서구”를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소는”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교

육 장소는 구”로 한다.

제8조 중 “당해시설등”을 “해당 시설 등”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 문화대학장”을 “따라 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료되는날”을 “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신청과목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과목	
성 명		<u>생년월일</u>	
수 강 료			

이 접수증은 개강식 후 수강증과 교환해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문 화 대 학 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u></p>	<p><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u> -----.</p>
<p>제2조(교육과목) 교육과목은 기본 소양교육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필요과목으로 하여 이를 <u>학장이 정한다.</u></p>	<p>제2조(교육과목) ----- -----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 --.</u></p>
<p>제3조(교육시간) 교육시간은 교육 과목별 <u>주6시간</u> 수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교육 시간은 과목 특성에 따라 정한다.</p>	<p>제3조(교육시간) ----- ----- <u>주 6시간</u> ----- -----.</p>
<p>제5조(수료자대우) <u>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 이라 한다) 수료자는 서구에서 필요로 하는 명예기자, 구정모니터요원으로 우선 활용한다.</u></p>	<p>제5조(수료자 대우)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u> -----.</p>
<p>제6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만 18세이상 구민으로서 <u>인천광역시</u></p>	<p>제6조(교육대상) ----- <u>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구 -----</u></p>

<p><u>시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u></p>	<p>----- --.</p>
<p>제7조(교육장소) <u>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소는 문화회관에 위치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u></p>	<p>제7조(교육장소)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교육 장소는 구 -----.</p>
<p>제8조(모집정원) <u>교육과목별 모집정원은 당해시설등을 감안하여 학장이 정한다.</u></p>	<p>제8조(모집정원) ----- ----- <u>해당 시설 등</u> -----.</p>
<p>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u>조례 제14조에 의한 수강료의 징수 납입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0조(수강료의 납입결과 통보) <u>조례 제14조에 따라 수강료의 징수·납입 시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11조(수료증 교부) ①수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u>의하여 문화대학장 명의로 교부한다.</u> ②수료식은 모든 <u>교육과목이 종료되는날</u>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1조(수료증 교부) ① ----- ----- <u>따라 학장</u> -----. ② ----- <u>종료되는 날</u> -----.</p>
<p>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u>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12조(운영규정) ----- <u>시행에</u> -----.</p>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8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 (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정비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사용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로,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를 “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전시프로그램(포스타, 전단, 팸플릿)”을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의거”를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사용허가시”를 “따른 사용허가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를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훼손시는”을 “훼손 시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후”를 “따라 사전허가와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전에”를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예정일 7일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제2호중”를 “제2호 중”로 한다.

제12조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를 “제23조에 따른 위탁 관리 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구문화회관사용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입 장 료					
비 고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의 주소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6호서식)

서구문화회관사용료(감면)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 소	연락처		사		
			자		
전시,공연,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일 회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시설				
감면신청 사유					
<p>「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청인의 주소 : 성 명 :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u> <u>시행규칙</u></p>	<p><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u> <u>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에 의한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의 대관 및 사용에</u> ----- -----.</p>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u>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u>이전 또는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u>이 정하는 상.하반기 정기대관 일정에 별지 제1호서식에 <u>의하여</u>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 <u>이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u> ----- . ---- ----- <u>따라</u> ----- -----.</p>
<p>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u>신청시</u>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 <u>신청 시</u> ----- -----.</p>
<p>1. ~ 3. (생략) 4. 공연, <u>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u>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p>	<p>1. ~ 3. (현행과 같음) 4. ----- <u>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u> ----- -----.</p>

지 않은 경우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거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구청장은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시 1건의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

----- 5일 전까지 -----.

③ -----

----- 따라 -----.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 따라 -----
----- 범위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의 -----

② -----

----- 따라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허가기간의 제한) ① -----
----- 다른 사용허가 시 -----

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기간이 만료된후 동일한 공연, 행사, 전시, 영화에 대하여는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생략)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시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 제12조제3항에 따른 -----

② ----- 제1항에 따른 -----

제6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훼손 시는 -----

제8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 따라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

<p>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u>의하여</u> 구청장에게 <u>사용예정일 7일전에</u>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입장권은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②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u>의하여</u>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u>제12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p> <p>제10조(시설점검) ①·② (생략)</p> <p>③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u>의하여</u> 대장을 비치하고 점검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p> <p>제11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1조의 별표 <u>제2호중</u> 의상 및 대소구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징수품목과 금액을 내부지침으로 매년 지정하고 비치해야 한다.</p> <p>제12조(자체운영규정) 조례 <u>제23조</u>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 ----- <u>따라</u> 구 청장에게 <u>사용예정일 7일 전에</u> ----- . - ----- ----- .</p> <p>② ----- ----- ----- <u>따라</u> ----- ----- <u>제12조제1</u> <u>항에 따라</u> ----- .</p> <p>제10조(시설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따라</u> ----- ----- .</p> <p>제11조(사용료의 징수) ----- ----- <u>제2호 중</u> ----- ----- ----- ----- .</p> <p>제12조(자체운영규정) ----- <u>제</u> <u>23조에 따른</u> 위탁관리 시, ----- ----- ----- ----- .</p>
--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49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 문화회관에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강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기준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2. 주요내용

-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조례안 제1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42) 또는 Fax(560-274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출연월일	2015. . .

기획예산실장 심사를 마침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2. 개정이유

- 서구 문화회관에 이미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수강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반환의 세부기준 신설하여 사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국무조정실·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및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해당 과제

3. 주요내용

- 수강료 반환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조례안 제10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및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비중”를 “설비 중”로, “각호와”를 “각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년간 2회이상”을 “연간 2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회이상 회관사용”을

“2회 이상 회관 사용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등으로”를 “취소 등으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사항에”를 “각 호의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30%범위안”을 “30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00명이상 일시 이용시”를 “100명 이상 일시 이용시”로, “40%범위안”을 “4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범위안”을 “50퍼센트 범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연일 하루 전 17:00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으로 환불 요구 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시간중”을 “사용 시간 중 ”으로, “그사용료”를 “그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를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사용시”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 시”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분이상 1시간미만”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30%”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

제11조제3항 본문 중 “없는한 허가일로부터”를 각각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를 “한 번만 10일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정으로 인하여”를 “사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를 “철거일부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에”를 “사용기간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없이”를 “동의 없이”로, “재대여”를 재대여(再貸與)“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회수시”를 “회수 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취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 중 “각종행사”를 “각종 행사”로, “회관내에”를 “회관 내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가입일로부터”를 “가입일부터”로, “1년후”를 “1년 후”로, “1회에 한하여 연회비의 10%”를 “한 번만 연회비의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1제2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문화교양센터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 중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제2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문화회관”을 “회관”으로 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사용자"라 함은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입장권"이라 함은 문화행사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입장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5. "단체"라 함은 단체인솔자에 의해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회관의 시</p>	<p><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u></p> <p>제1조(목적) -----<u>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에</u>----- -----.</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4조에 따른</u>----- -----.</p> <p>4. ----- --<u>및 그 밖의</u>----- -----.</p> <p>5. ----- --<u>따라</u>----- -----.</p> <p>제3조(대관의 범위) ① -----</p>

설 및 설비중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생략)
-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행사·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생략)
-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년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4. 연 2회이상 회관사용 취하사실이 있는 경우
- 5. (생략)

----설비중-----
-----각 호와-----.

- 1. (현행과 같음)
- 2. -----
-----그 밖의-----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범위-----
-----.

제5조(사용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회관 내-----

- 2. (현행과 같음)
- 3. -----또는 제4호에 따른-----
-----연간 2회 이상-----

- 4. ----2회 이상 회관 사용의-----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허가취소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 5. (생략)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료 징수) ① 입장료는 문화회관에 입장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되, 공연 또는 행사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입장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다.

6. 그 밖에 -----

제6조(허가취소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그 밖에 -----
-----.

1. -----따
른 -----

2. -----그 밖의 -----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

② -----
-----취소
등으로 -----

-----.

제7조(입장료 징수) ① -----
회관-----

-----.

② (생략)

제8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기타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1. 단체일 경우에는 입장료의 30%범위안에서 감면
2. 공공기관(학원포함)과 기업체등에서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입장료의 40%범위안에서 감면
3. 회관에서 모집한 정기회원에게 입장료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제10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

제9조(입장료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각 호의 사항을-----
-----.

1. -----
-30퍼센트 범위 -----
2. -----
-----100명 이상 일시 이용 시 -----40퍼센트 범위 -----

3. -----
-----50퍼센트 범위 -----

제10조(입장료 반환) -----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그 밖에 -----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신 설>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사
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에게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1. ~ 3. (생략)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사용
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
여 회관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1. 2시간이상 초과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사용
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50%

3.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시

3. 입장권 구입자의 권리를 보
장하고자 공연일 하루 전 17:0
0까지 예매처 방문 및 유선 상
으로 환불 요구 시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사용시
간 중 -----
-----그
사용료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

1. 2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
시 -----50퍼센트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

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
 4. 30분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20%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한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
일로부터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
 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사용당일에 허가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3항의 기간내에 납
 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영화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
 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

시-----30퍼센트
 4. 30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20퍼센트

③ -----
 -----없는 한 허가일로부터 ---
 -----허가
일로부터 -----

 -----.

④ -----
 -----기간 내에

 -----한 번만 10일의 범위 -----

 -----.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
 -----해당 -

 -----제11조의 사용료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

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와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구가 운영하는 문화활동 단체 이용시

2. 회관이 필요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공연

3.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5할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제11조의 사용
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인천광역
시 서구(이하 -----

-----이용 시

2. -----따라 -----

3.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

만,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3. 허가사용일 30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4. 허가사용일 15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 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50퍼

센트 -----.

1. 천재지변, 그 밖의 -----

2. -----사정으로 -----

3. -----30일 전에 -----

4. -----15일 전에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
-----기간 중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른 -----

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

 ----. -----

 -----철거일부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사용기간 중에 -----

 -----.

② -----제1항에 따른 --
 -----태만히 하여-----

 -----.

제16조(양도 및 재대여 금지)----

 -- 동의 없이-----
 -----재대여(再貸與)-----.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수료는 판매액의 1할 범위 안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④ 입장권의 잔표와 회수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구청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1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구청장이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④ -----회수시 -----

-----.

제18조(입장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
-----.

1. (현행과 같음)
2. 만취한 사람
3. -----
-----휴대한 사람
4. -----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

--인정하는 사람

제19조(홍보물의 부착) -----
각종 행사-----
-----회관 내에 -----

-----.

제20조(문화회관의 회원) ① (생략)

② 정기회원은 일반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회비는 각 15,000원, 30,000원, 60,000원으로 하되, 1년후 재가입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회비의 10%를 감면하며, 회원증의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할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제20조의1(문화교양센터 운영) ① (생략)

② 문화교양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교양센터 수강료는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문화회관의 임대) ① 구청

제20조(문화회관의 회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입일부터-----

-----1년 후-----
-----한 번만 연회비의 10퍼센트-----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문화교양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에서-----

③ 문화교양센터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회관의 임대) ① -----

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임대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은자는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구청장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범위 -----
-----.

②임대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부를 받는 사람은-----
-----.

제22조(위탁관리)-----
회관-----

-----.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